

오늘부터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무엇이 바뀌나

질병청,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지침 개정 생활지원비 등 당분간 지원...격리참여자 등록해야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 간의 격리 권고 체제로 전환된다.

보건소에서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는 자택에서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으로 바뀐다. 격리 동안 병·의원 방문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5월 31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상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데 따른 방역조치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그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던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바뀌고 격리 권고문을 안내한다.

대상자에게는 닷새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현,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외출을 허용한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을 위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당분간 지급을 이어가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한다.

보건소가 보내는 양성 확인 통보 문자에는 격리참여 등록을 신청하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다.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가능하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지금과 같이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해야 한다.

고위험군의 격리 기간은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다.

입원 환자는 병원 내 감염 위험을 고려해 격리 권고 기간을 7일로 정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면역 상태, 임상증상을 고려해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지급처럼 지원한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 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도 중단한다. 다만 중증으로 악화될 때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배정 체계는 유지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7개 남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

단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유지하고,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지속하지만,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 조사, 관리는 중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한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닷새 동안의 결석을 권고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서류를 학교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진자에게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 임신부나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이 닷새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쉬 수 있도록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시작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국민들은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



비상상황 대처교육 받는 항공서비스전공 학생들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 비상구가 213m 상공에서 개방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월 31일 오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호텔항공관광과 항공서비스전공 학생들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

강용석 “박수현 여자문제” 1심 무죄 선고

2020년 4·15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선거 기간 옥외대담을 진행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근)는 강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가세연에서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여자 문제로 어느 직을 사퇴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에서 사퇴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도지사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여자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기에 이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 등은 21대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81조1항이 금지하고 있는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이 지정한 단체가 아니며, 청중이 없기에 대담 형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방송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허용되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90만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정 출연하며 출연료를 수령했다”며 “피고인들이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가세연은 공직선거법 81조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김용호 전 기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